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060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성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환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진 담당변호사 장세영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피고 C과 D 사이에 2022. 6. 30. 체결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22. 7. 13. 접수 제66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B과 D 사이에 2022. 4. 5.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22. 4. 8. 접수 제3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317,867,9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22. 2. 18. 원고에게 317,867,950원을 2022. 2.경부터 2022. 12.경까지 매월 말일에 26,500,000원씩 11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2023. 1. 31. 26,367,950원을 변제하고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22. 2. 28. 2,000만 원, 2022. 5. 25.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외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2. 3. 2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을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277,867,950원(= 317,867,950원 - 40,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다.

다. D은 2022. 4. 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4.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31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은 2022. 6.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7.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66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피고 B은 D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77,867,9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15,062,880원인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시가 약 4,233,700원인 이 사건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D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277,867,950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도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 내지 23호증, 을가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선의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 B은 D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관계로 같은 마을의 전 이장인 F의 주선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② D은 경남 의령군 G 도로 17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는 피고 B의 집 및 과수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③ 피고 B은 추후 위 도로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도로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도로를 분할측량하여 그 중 102㎡를 이 사건 제3 부동산으로 분할하고 그 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2022. 2. 27. 계약금 2,000만 원, 2022. 4. 5. 잔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피고 B은 2022. 3. 4. 지적측량견적을 받아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 절차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비 859,100원과 경계복원비 663,300원을 지급하였다.

⑤ 피고 B이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였고 그 외 가압류 등 어떠한 기재도 없어 피고 B으로서는 D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피고 B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19. 5. 27. D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H 단독주택 및 그 대지 등을 매수하였는데 위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이 사건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위 매매계약에 포함하여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분할측량 이후 늦게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별지

목 록

1. 경남 의령군 I 전 1,418㎡
2. J 답 111㎡
3. K 도로 102㎡
4. G 도로 70㎡
5. L 답 206㎡. 끝.

